

2020년도

# 제5차 이사회 서면결의 회의록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 - 목 차 -

## I. 보고안건.....1-9

1. 전차 이사회 초록 ..... 1
2.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진행 보고의 건 ..... 2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보고의 건 ..... 3
4. 미디어윌 항소심 사건 진행사항 보고의 건 ..... 4-9

## II. 심의 안건..... 10-11

### 1. 각종 규정 개정 심의의 건 ..... 10-11

- 별첨. 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 사항 및 신규대조표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문  
3)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구.국가대표 선발규정) 내용 및 주요사항  
4)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전문  
5) 인사규정 개정 주요 사항 및 신규대조표  
6)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개정 신규대조표

# I. 보고 안건

## 1 전차 이사회 초록

- 2020년 7월 15일 (수) 서면결의로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이사회는 임원 25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되었습니다.
- 성원된 2020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보고안건은 총 2건으로 전차 초록 보고,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및 기자재 매각 입찰 결과 보고를 진행하였고,
- 심의안건으로는 총 2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사전 승인 심의의 건, 2020년도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취소 심의의 건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 내용

지난 2020년 제3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육사코트를 건립한 한아테크와 협의를 완료하여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 □ 위원회 개최 현황

- 1) 선정 위원회명 : 육사테니스코트 원상복구 및 기자재 매각을 위한 선정위원회
- 2) 위원회 명단 : 노종대 총남협회장, 김영철 행정감사, 황광선 이사
- 3) 위원회 개최일시 : 1차 2020.07.22 (수) 14시 / 대한테니스협회 2층 회장실  
2차 2020.07.29 (수) 11시 / 대한테니스협회 2층 회장실

### □ 철거 진행 현황

철거대상중 휴게동 2개는 철거가 되었고 실내코트는 태풍 및 우천으로 인하여 2020.9.20일경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

끝.

### 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보고의 건

###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 내용

지난 2020년 제4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사전 심의의 건」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발 사항

가. 피 고 인 :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대표이사 곽용운)

나. 죄 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다. 적용법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라. 구속여부 : 불구속

#### □ 범무법인 현황

가. 범무법인명 : 범무법인 평산

나. 선 임 료 : 총액 15,000,000원, 부가세 별도 / 성공보수 없음

다. 지급시기 : 현재 가압류된 협회 통장의 사용이 가능한 이후 지급

라. 선임사유 : 협회의 자금 집행을 후불로 진행하도록 수입제안

#### □ 공판기일

가. 일시 : 2020.09.24. 11:20

나. 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7호법정(제1신관 1층)

끝.

##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미디어윌 항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 나. 보고 내용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170

◆ 심급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서울동부지방법원	<a href="#">2017가합102721</a>	2018.07.20 원고승

◆ 주요내용

미디어윌의 요청에 따른 옥사코트 감정평가서가 2020.05.28일에 제출됨에 따라 2020.07.09일에 재판이 재개되었으며, 2020.09.17일에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양측에 미디어윌과의 협약을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와 불이행하였다고 할 경우 그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2020.10.8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0.10.15까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일내용

일자	내용	결과
2019.04.03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5:20)	속행
2019.05.01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5:50)	속행
2019.05.29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1:40)	속행
2019.07.03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0:30)	기일변경
2019.09.04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0:40) 추정기일(추정사유:감정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속행
2020.07.09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4:30)	기일변경
2020.07.09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1:40)	속행

2020.08.20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4:40)	속행
2020.09.17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0:50)	속행
<b>2020.10.22</b>	<b>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0:40)</b>	<b>결심 예정</b>

◆ 사건 진행 상황

일자	내용
2018.08.22	사건접수
2018.08.27	보정권고
2018.08.2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소송위임장 제출
2018.08.30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08.30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디어월에게 항소장부분/소송안내서 송달
2018.08.30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08.31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기록송부서 제출
2018.10.0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준비서면 제출
2018.10.02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디어월에게 준비서면부분(18.10.01.자) 송달
2018.10.0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이재욱,전병하,홍기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0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제출
2018.11.19	원고 소송대리인 문희찬, 한상혁 송달증명
2018.11.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문희찬 집행문(정본포함)
2018.11.19	원고 소송대리인 문희찬, 한상혁 판결정본
2018.11.19	원고 소송대리인 문희찬, 한상혁 집행문및송달증명
2019.01.17	원고 소송대리인 문희찬, 한상혁 판결정본및 집행문수통부여신청
2019.01.21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에게 집행문부여통지서 송달
2019.01.30	원고 소송대리인 문희찬, 한상혁 송달증명
2019.01.30	원고 주식회사 미디어월 송달증명
2019.03.08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9.03.08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9.04.0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준비서면 제출
2019.04.02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에게 준비서면부분(19.04.01.자) 송달
2019.04.03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5:20)
2019.04.2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준비서면 제출
2019.04.2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소송고지신청서 제출
2019.04.29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준비서면부분(19.04.29.자) 송달
2019.04.30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소송고지서

	(19.04.29.자) 송달
2019.04.30	피고지인 주원흥에게 소송고지서(19.04.29.자) 송달
2019.05.0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5.01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5:50)
2019.05.01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에게 증거신청에대한의견서(19.05.01.자) 송달
2019.05.2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준비서면 제출
2019.05.27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에게 준비서면부분(19.05.27.자) 송달
2019.05.29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1:40)
2019.06.27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준비서면 제출
2019.06.27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19.06.27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준비서면부분 (19.06.27.자) 송달
2019.07.01	기일변경명령
2019.07.02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9.07.02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이대아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9.07.03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0:30)
2019.08.3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증거제출서 제출
2019.08.3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서증 제출
2019.08.30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증거제출서 (19.08.30.자) 송달
2019.08.30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서증(19.08.30.자) 송달
2019.09.0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감정신청서 제출
2019.09.0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준비서면 제출
2019.09.0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담당변호사지정변경서 제출
2019.09.02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이대아에게 준비서면부분(19.09.02.자) 송달
2019.09.04	변론기일(서관 409호 법정 10:40) 추정기일(추정사유:감정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2019.09.04	감정인(통역인)지정결정
2019.09.04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이대아에게 감정신청서(19.09.02.자) 송달
2019.09.04	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욱,전병하,홍기태,이대아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이대아에게 감정인지정결정문 송달
2019.09.05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김민기에게 감정인(통역인)지정결정등본 송달
2019.10.17	감정인 000에게 감정인지정결정문/감정촉탁서/감정신청서(19.09.02.자) 송달
2019.11.1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담당변호사지정변경서 제출
2019.11.1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감정에 관한 의견

	서 제출
2019.11.1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서증 제출
2019.11.19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감정에관한의견서(19.11.18.자) 송달
2019.11.19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서증(19.11.18.자) 송달
2019.12.0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이윤수 감정사항보완서 제출
2019.12.06	감정평가사 권오억에게 감정사항보완서(19.12.06.자) 송달
2019.12.06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전병하,홍기태,이대아에게 감정사항보완서(19.12.06.자) 송달
2019.12.1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홍기태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감정에 관한 의견서(2) 제출
2019.12.13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감정에관한의견서(2)(19.12.12.자) 송달
2019.12.18	감정인 권오억 예상 감정평가수수료 내역 제출
2019.12.19	감정인 권오억 예상 감정평가수수료 내역(수정) 제출
2020.01.2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2.0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이윤수 감정사항보완서 제출
2020.02.0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이윤수 감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20.02.05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에게 감정사항보완서(20.02.04.자) 송달
2020.02.05	감정평가사 권오억에게 감정에관한의견서(20.02.04.자) 송달
2020.02.05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에게 감정에관한의견서(20.02.04.자) 송달
2020.02.05	감정평가사 권오억에게 감정사항보완서(20.02.04.자) 송달
2020.03.1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0.05.1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이윤수 감정사항보완서 제출
2020.05.18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에게 감정사항보완서(20.05.15.자) 송달
2020.05.18	감정평가사 권오억에게 감정사항보완서(20.05.15.자) 송달
2020.05.28	감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회보 제출
2020.05.29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20.05.29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감정평가회보(20.05.28.자) 송달
2020.05.29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에게 감정평가회보(20.05.28.자) 송달
2020.05.30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준비명령등본 송달
2020.05.30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에게 준비명령등본 송달
2020.06.0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이윤수 사실조회신청서((주) 대화감정평가법인 ) 제출
2020.06.0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신주영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20.06.0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신주영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20.06.09	(주)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인 권오억)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20.06.11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06.11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신주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06.1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20.06.12	기일변경명령
2020.06.12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20.06.12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신주영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20.06.15	대화감정평가법인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2020.06.16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신주영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준비서면 제출
2020.06.17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준비서면부분(20.06.16.자) 송달
2020.06.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석명기한연장신청서 제출
2020.06.2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준비서면 제출
2020.06.29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신주영에게 준비서면부분(20.06.26.자) 송달
2020.07.0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신주영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준비서면 제출
2020.07.08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준비서면부분(20.07.08.자) 송달
2020.07.09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4:30)
2020.07.09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1:40)
2020.08.14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신주영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준비서면 제출
2020.08.1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이윤수 준비서면 제출
2020.08.18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준비서면부분(20.08.14.자) 송달
2020.08.18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이재욱,전병하,신주영에게 준비서면부분(20.08.18.자) 송달
2020.08.20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4:40)
2020.09.0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송평근 박경호 이승규 이경은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20.09.0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송평근 박경호 이승규 이경은 소송위임장 제출
2020.09.14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신주영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준비서면 제출
2020.09.1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송평근 박경호 이승규 이경은 준비서면 제출
2020.09.1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증거설명서 제출
2020.09.1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준비서면 제출
2020.09.15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신주영 전병하 이재욱 이대아 증거설명서 제출
2020.09.15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이윤수에게 준비서면부분

	(20.09.14.자) 송달
2020.09.15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경호, 송평근, 이경은, 이승규에게 준비서면부분(20.09.14.자) 송달
2020.09.15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 이재욱, 전병하, 신주영에게 준비서면부분(20.09.15.자) 송달
2020.09.15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 이재욱, 전병하, 신주영에게 증거설명서(20.09.15.자) 송달
2020.09.15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 이재욱, 전병하, 신주영에게 준비서면부분(20.09.15.자) 송달
2020.09.15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이윤수에게 증거설명서(20.09.15.자) 송달
2020.09.15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경호, 송평근, 이경은, 이승규에게 증거설명서(20.09.15.자) 송달
2020.09.1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김민기 기일진행 참고사항 제출
2020.09.17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0:50)
2020.10.22	변론기일(서관 제305호 법정(서관⑥번 법정출입구) 10:40)

## Ⅱ. 심 의 안 건

1

### 각종 규정 개정 심의의 건

- 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 2)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전면 개정 (구.국가대표 선발규정)
- 3) 인사규정 개정
- 4)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개정

### 가. 의결주문

대한테니스협회 각종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 나. 제안사유

협회 정관 제14조 2항 2호에 의거하여 각종 규정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항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다. 내용

우리 협회에서는 2020년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0.09.15)에서 심의·의결된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전면 개정 (구.국가대표 선발규정), 인사규정 개정,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금번 이사회에서 심의하고자 함.

© 규정 개정 사유

규 정 명	사 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협회 규정에 부합하고자 개정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전면 개정 (구.국가대표 선발규정)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구.국가대표 선발규정) 전면 개정에 따라 협회 규정에 부합하고자 개정
인사규정 규정 개정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개정	공인구 제조공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검사료 부분 낮추는 것으로 개정

별첨 : 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 사항 및 신규대조표

-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문
- 3)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구.국가대표 선발규정) 내용 및 주요사항
- 4)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전문
- 5) 인사규정 개정 주요 사항 및 신규대조표
- 6)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개정 신규대조표

## 라. 의결 사항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구.국가대표 선발규정) 전면 개정, 인사규정 개정,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 함